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오염방지조치 사전실시〉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223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오염방지조치 사전실시	3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5일 조정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보존 선박 등(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함)에서는 그 선박에 대한 관리주체가 모호하여 주기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 이는 선체노후 등으로 인한 침수·침몰·파괴가 발생하여 해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과거에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해양오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침수·침몰 등과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원인자에게 방제 의무가 발생하고, 해양경찰청의 긴급방제 및 배출방지조치도 사고 이후에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비점이 있음. 이와 관련,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위해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 위해도가 높은 선박은 잔존유 제거 등과 같은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사전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을 조사하고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선박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해양환경 위해도를 평가하고, 필요시 배출방지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에서의 고질적인 오염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5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오염방지조치 사전 실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장기간 계류, 계선 및 방치된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하여금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오염물질 배출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위해도 평가 및 배출방지 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 (생략) <u><신설></u>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장기간 계류, 계선 및 방치된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선박 소유자</u>

②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 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또는 관리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위해도 평가 및 배출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 -- 제1항 및 제2항----- -----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초·충돌·침몰·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된 이후에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 해양오염을 사전예방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특히, 장기계류 선박 등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경우 관리 미흡 시 사고위험성이 높고 선박에 남아 있는 폐유의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부산항 등 무역항 내 방치선박, 장기계류 선박***등이 159척에 이르고 있는데, 신고완료 되었으나 노후화된 선박의 장기계류가 지속될 경우 선체 침수나 기름유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임.

[표] 무역항 장기계류선박 현황

(단위 : 척, 2024년 8월기준)

구분	계	계선신고 선박	방치선박*	감수보존 선박**	장기계류 선박***
부산	176	17	13	4	142
인천	18	8	10	0	0
여수	4	1	-	1	2
마산	1	1	-	-	-
울산	15	15	-	-	-
동해	2	2	-	-	-
군산	17	16	1	-	-
목포	13	-	5	1	7
포항	1	-	-	-	1
평택	1	-	1	-	-
대산	-	-	-	-	-
계	248	60	30	6	152

* 방치선박 : 계선신고 등 행정행위 없이 무단으로 방치하여 6개월 이상 미운항 중인 선박

** 감수보존 선박 :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는 선박

*** 장기계류 선박 : 선박검사기관에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청에 계선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

□ 이에 개정안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오염물질 배출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위해도 평가 및 배출방지조치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오염 취약선박 등 해양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발생원을 사전에 관리하고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개정안에 의한 위해도 평가는 선박관리, 선박특성, 오염물질, 사고이력 등을 항목으로 하고, 배출방지 조치는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육상 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손상부 긴급수리 등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침수 또는 오염물질 유출 가능 개소를 막는 조치 등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해도 평가의 제도 도입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내용과 현행 법률과의 체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우선, 위해도 평가 및 조치에 대한 개정안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위해도 평가 및 배출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해양 경찰청장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제도를 집행함에 있어 위해도 평가의 대상인 해양오염 취약선박은 장기간 계류되거나 방치된 선박으로 선박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선박소유자가 직접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법률 체계 측면에서 현행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¹⁾에서는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정안의 위해도 평가와 동일한 용어이므로 혼선이 없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최근에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제4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이 개정안과 동일하므로 문구를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장기계류 선박에 대하여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오염물질 배출방지조치를 취하게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해당 결과를 선박의 소유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객관성과 절차적 타당성 확보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8

1) 「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의2(침몰선박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침몰선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危害度) 평가